

법제처 보도자료(총 4매)



법령제명 띄어쓰기, 2005. 1. 1.부터 실시

- 법제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의 제명은 하나의 단일한 고유명사로 간주, 아무리 길더라도 붙여 쓰기로 표기하여 왔으며, 이는 정부수립 이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에도 신문기사, 법률관련 서적 등에서는 임의로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국민들은 법률명이 붙여 쓰기로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에서 붙여쓰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붙여 쓰기 관행은 일제시대 일본법을 강제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서 띄어쓰기가 없고 본문까지 붙여 쓰는 일본식 표기방법이 조선총독부령 등 법령에도 사용되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국회가 제정·공포한 법률에도 제명 및 본문을 붙여 쓰기로 표시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3년부터 띄어쓰기가 본문에는 도입되었으나, 법령의 제명에는 계속 붙여 쓰기로 표현되었다.

□ 붙여 쓰기는 법령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는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현재 최대 83자에 이르는 법률명칭까지 붙여 쓰고 있어 일반국민이 보기에 어느 부분에서 띄어 읽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띄어쓰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행 법률 중 가장 긴 명칭을 가진 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83자)

□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협의하여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제명을 띄어 쓰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법령DB 시스템의 개편비용, 법령집 출판업계의 표기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의 측면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바꾸어 나가도록 방침을 마련하였다.

□ 법제처가 국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 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하게 되며,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또한 법령명을 문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 ‘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 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장 중에서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로 표시하도록 함)

※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예시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및∨주한미군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또한 법제처에서는 현재 개정법령의 명칭이 “□□법중개정법률안” (부분개정의 의미), “□□법개정법률안”(전문개정의 의미)으로 각종

회의자료, 국회안전자료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국민이 그 명칭 가운데 ‘중(中)’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보다 알기쉬운 방식으로 개선, 앞으로는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반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띄어쓰기와 관련한 정부기관 및 민간부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명칭을 띄어쓰기로 표시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마련, 각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끝 -